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발의자 : 정병용

의원

제출일 : 2026.

7.

1. 제안이유

성년이 된 하남시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급대상(안 제4조)
- 라. 지급신청, 지급시기(안 제6조~안 제7조)
- 마. 환수조치(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정수)

- 본 조례안은 성년이 된 시민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화폐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협의 결과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대상 규모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기준과 운영 절차 등을 하남시 실정에 맞게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